



제311회 임시회

2012.06.13.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 미 애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6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3. 제안이유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대상은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생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농·산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 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 우선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안 제11조)과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함을 명시함(안 제12조).

바. 작은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우대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주거 편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직원 우대 사항을 명시함(안 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

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 8. 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7. 23]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7. 23]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교수학습 지원과장·행정예산과장<개정 2008.8.19, 2011. 12. 30>
2. 위촉 및 임명위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교육전문가, 농산어 촌지역의 교육청·학교 및 학부모 등 농산어촌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개정 2010. 8. 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역교육청협의회) ① 지역교육청 관내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교육청협의회(이하 “지역교육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교육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622호, 2011. 12. 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